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11. 26. 이광희의원 등 16인

나. 회부일자 : 2025. 11. 2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2. 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6. 8.26.)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6. 9. 1.)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광희 의원)

현행법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시험과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을 보유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차 시험과목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을 보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시험의 모든 과목을 검정 받지 아니하였으며, 자격별로 검정 받은 시험과목의 종류에도 차이가 있음.

이에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1차 시험과목 중 일부 과목 면제도 가능하도록 하여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도의 실효성과 타 응시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함(안 제75조의3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생략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 강명구)

시험 면제 대상자별로 제1차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지 그 범위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관련위원회 의견 요지

없음.

10.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 [붙임]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9.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별로 제1차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지 그 범위에 대해서도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가 필요하여 자구를 수정하고(안 제75조의3제3항), 하위 법령 규정 마련을 위해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조정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5조의3제3항 중 “제1차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차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로 한다.

안 부칙 본문 중 “공포한”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75조의3(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교부 등) ① · ② (생략)	제75조의3(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교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75조의3(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교부 등)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을 보유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③ ----- ----- ----- ----- ----- ----- ----- ----- ----- ----- 제1차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	③ ----- ----- ----- ----- ----- ----- -----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차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
④ ~ ⑨ (생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④ ~ ⑨ (개정안과 같음)

	부칙 이 법은 <u> 공포한 </u> 날부 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u> 공포 후 6개</u> <u>월이 경과한 </u> 날부 터 시행한다.
--	--	---

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3제3항 중 “제1차 시험을”을 “제1차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시험방법”을 “시험방법, 시험 면제의 범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5조의3(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증 교부 등) ① · ② (생 략)	제75조의3(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증 교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국가기술 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 른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을 보유한 사람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는 <u>제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u> <u>다.</u>	③ ----- ----- ----- ----- ----- ----- ----- ---- <u>제1차 시험의 일부 또는</u> <u>전부를</u> -----.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⑨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u>시험과목, 시험방법, 응시자격,</u> <u>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u> <u>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시험</u> <u>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u> <u>령령으로 정한다.</u>	⑨ ----- ----- <u>시험방법, 시험</u> <u>면제의 범위</u> ----- ----- ----- -----.